

대전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0가단776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, 고봉민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

변 론 종 결 2022. 3. 31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84,852,087원,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5,835,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(이하 “D”이라 줄인다)는 2016. 1. 13. 대전 중구 E 주상복합아파트(이하 “이 사건 건물”이라 한다)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자 중 주식회사 F(공사대금 청구의 승소 판결(대전지방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가합3026 판결)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의 지급명령(대전지방법원 2010. 4. 13.자 2010차4164 결정)을 받아 확정되었다}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및 추심금과 위 F이 행사 중인 유치권을 모두 양수받는 ‘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양도양수계약’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였다.

나. D과 원고는 2017. 4. 1. D이 위와 같이 갖게 된 채권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새로운 동업법인을 설립해 저가에 낙찰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 뒤 피고 B(D)과 원고가 1:1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다.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G호(이하 “이 사건 상가”라 한다)에 관하여 2017. 7. 4. 임의경매(대전지방법원 H) 절차가 개시되었다. 이에 위 동업계약에 기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입찰을 하여 2018. 7. 18. 12억 357만 원에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위와 같이 낙찰을 받은 뒤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사우나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. 이후 원고 명의로 시설공사를 도급하여 2019. 6.경 사우나 시설을 준공하였다.

마. 위 시설 공사 준공 무렵 피고 B과 원고는 자금의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, 이를 위해 주식회사 I(이하 I라고 줄인다)를 설립하였고,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었다.

바. 위 시설 공사 후 I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후 2019. 6. 14. J조합 등 5개

금융기관으로부터 34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다.

사. 그 후 원고는 모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2019. 9. 6. I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,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.

아. 그런데 피고 B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9. 9. 10. 구속되었다.

자. 2019. 10. 28.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.

- 피고 B은 I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.
- 피고 B이 소유한 I 주식 40%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.
- 이 사건 상가에서의 사우나 영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이전한다.
- 2019. 10. 28.까지 I가 부담하는 각종 요금, 세금, 부대비용을 모두 정산하여 남은 채무가 없도록 한다(이하 이 사건 합의 조항이라 한다).

차. 그 이후 원고가 I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

가. 피고 B의 약정금지급의무

1)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9. 10. 28. 합의 당시 위 피고가 그 때까지 E에 있는 K 사우나 운영 등과 관련된 I가 부담하는 각종 요금, 인건비, 세금,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정산하여 남은 채무가 없도록 하는 이 사건 합의 조항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.

2) 피고 B이 2019. 10. 28.까지 발생한 아래와 같은 비용 내지 채무를 지급하지 않았다.

① 2019. 10.분 전기료 15,950,540원

② 2019. 11.분 연금보험료 466,100원, 고용보험료 135,950원, 산재보험료 78,580원 등계 680,630원

③ 2019. 10.분 건강보험료 2,003,220원, 연금보험료 1,695,500원, 고용보험료 322,610원, 산재보험료 322,700원 등 합계 4,344,030원,

- ④ 2019. 10. 상수도요금 등(상가) 3,458,180원
 - ⑤ 2019. 10. 상수도요금 등(사우나) 1,771,860원
 - ⑥ 근로소득세 1,755,780원
 - ⑦ 연금보험료 1,767,500원
 - ⑧ 2019. 10월분 미지급 인건비 합계 11,326,680원(L 1,710,000원, M 1,056,000원, N 2,137,680원, O 2,115,000원, P 2,400,000원, Q 1,908,000원)
 - ⑨ 부가가치세 5,163,870원, 세탁비 1,594,219원, 주차관제비용 1,092,898원, 엘리베이터 관리비용 110,000원 등 합계 7,960,987원
- 3)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. 10. 28. 합의에 따른 약정금인 위 ① 내지 ⑨의 합계금 49,016,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

- 1)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이 위 사우나를 운영한 기간 동안 현금 매출이 145,676,000원이었으나, 그 중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09,840,100원으로 그 차액인 35,835,900원 (145,676,000원 - 109,840,100원)을 피고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.
- 2)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35,835,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고 B의 약정금지급 책임에 관하여

- 1) 갑 제4,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 또는 비용이 발생하였고, 피고 B이 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.
- 2) 그러나 ① “2019. 10. 28. 합의 당시까지 I가 부담하는 각종 요금, 인건비, 세금, 기타 부대비용”은 그 이전에 이미 고지서가 발행되거나 명확하게 확정된 비용, 채무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,

위에서 본 그것들은 모두 합의 이후에 고지되거나 확정된 것이어서 구속되어 있던 피고 B이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, ② 설령 피고 B이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I에 그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, 위 합의만으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(갑 제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세금, 요금 등 비용은 2019. 11. 및 2019. 12.경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, I의 자금이 아닌 원고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, 이 부분에 관한 주장, 입증도 없다).

3)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

1) 갑 제2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.

2)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현금으로 사우나 운영비용 등을 상당 부분 결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 주장과 같은 차액이 모두 피고들이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, ② 설령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차액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I에 그 반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원고가 직접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.

3)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김성대